



(특)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

수신자 수신처 참조
(참조)

제 목 명예해양수산물 위촉(연임) 안내

1.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 운영중인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관련, 해양수산부로부터 명예해양수산물의 위촉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.

□ 명예해양수산물 위촉

구분	국가	성명	재위촉 기간
재위촉	파푸아뉴기니	정승화	2023.5.10.~2025.5.9

2. 이와 관련,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는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ofis.or.kr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, 원양산업 관련 정보 수집, 투자환경조사, 원양어선 조업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*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 :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ofis.or.kr) → 서비스
→ 명예해양수산물 → 활동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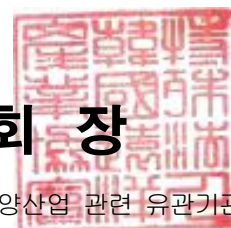
3. 아울러 신규 지역 위촉과 관련, 명예해양수산물으로서 적격자가 있는 경우 [붙임2]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.5.12.(금)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회신처 : 해외수산협력센터 김단비 행정관(lluvia@kofci.org / 044-868-7837)

붙임 1. 명예해양수산물 현황 및 연락처 1부.

2.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서 1부(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ofis.or.kr) 공지사항 참조) 끝.

(특)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장



수신처 : 한국원양산업협회, 협회 전 회원사, 해외수산투자협의회 전 회원사, 원양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

담당

김단비

팀장

이희진

센터장

이상묵

전결2023.5.8

협조자

시행 해외수산협력센터-262 (2023.5.8.) 접수 (. .)

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/ www.kosfa.org
전화 044)868-7837 전송 044)868-7840 / 담당자 이메일 lluvia@kofci.org

□ 참고

- 근거 :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(명예해양수산물관의 자격 등)
 - 자격 : 1.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
2.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
3.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
4.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
5.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임무 : 1.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·정보의 수집
2.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
3.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
 - 임기 : 2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-
- 추천 접수 후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지침 및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세칙 제6조에 따라 대상자 추천의 투명·공정성을 위하여 “**명예해양수산물관 위촉대상자 추천위원회**”를 운영하여 대상자 위촉
 - 위촉된 명예해양수산물관은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지침 및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정기보고 (월 1회), 수시보고 제출 수행 필수
 - (수당) 원양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400US\$의 정액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되, 평가결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 가능